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9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1042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redacted]

변 론 종 결 2017. 3. 30.

판 결 선 고 2017.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7,919,240원, 농어촌특별세 31,791,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0. 2. 10.경 [redacted]군 B 일원이 C지구로 지정되었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8. 12. 2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E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D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redacted]군 F 외 22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1. 9. 19. 및 2012. 3. 28.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신탁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는 2012. 11. 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골프장의 조성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구거' 등에서 '체육용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목변경'이라 한다).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목변경에 관한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라 한다)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감면받았다.

라. 피고는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목변경에 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자, 2015. 3. 3. 원고에게 이 사건 지목변경비용 13,085,250,9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70,260,240원, 농어촌특별세 31,791,92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9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14.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7. 11.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52,341,000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여부는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액 증가분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와 지목을 변경시킨 주체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D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위탁자로서 이 사건 지목변경을 한 이상,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식적인 소유권이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신탁받은 원고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토지의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9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라.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쟁점은 납세의무자이자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여야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탁자인 D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특례규정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9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상 그 부동산 취득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이어야만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신탁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③ 설령 원고가 아닌 D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D의 이 사건 지목변경 행위는 소유자인 원고가 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위탁자인 D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도록 한 것에 기인하고, 이로써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또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 지목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각 토지 가액증가분의 실질적 귀속자이자 간주취득자는 수탁자인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감면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D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에 비하여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신탁의 경우에 이 사건 특례규정의 문언을 벗어난 해석을 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9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규정은 수탁자이자 납세의무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손호영

판사 박지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9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끝>